



제429국회(정기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유치원·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파견근무 허용 >
■ 정성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241호)

2025.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유치원 ·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파견근무 허용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성국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8. 19.
3. 회 부 일 : 2025. 8.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활동의 교류,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교원을 국가기관, 교육기관 등으로 파견근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인 교원과는 달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파견 대상의 범위에 유치원·대학의 교원은 제외하고 파견 가능 업무 또는 기관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원이 국가적 교육정책에 참여하거나 기타 외부 기관에 연수하는 기회가 차단되어 전문성을 향상할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유치원·대학의 교원도 파견근무를 갈 수 있게 하고, 파견이 가능한 업무나 기관을 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한 수준에서 파견근무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공립·사립 교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5제1항).

Ⅲ. 검토의견

1. 유치원·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파견근무 허용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유치원·대학의 교원도 파견근무를 갈 수 있게 하고, 이들을 포함한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이 가능한 업무와 기관을 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5조의5(파견근무) ① 사립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육활동의 교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의 교류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공무원 및 다른 사립학교의 교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의5(파견근무)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국가적 사업의 수행, 교육활동의 교류 또는 그 업무----- ----- ----- ----- ----- -----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 ----- ----- -----.

나. 검토의견

-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¹⁾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²⁾에 따라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다른 정부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 파견근무를 갈 수 있음.

이러한 파견근무를 통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은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고 교육정책과 현장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여 교육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음.

-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그간 파견근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다른 기관으로 파견을 갈 수 없었음. 이에 최근 현행법이 개정 (2025.9.19. 시행)되면서 사립학교 교원도 정부기관이나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등에 파견근무를 갈 수 있게 되었음.

-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법률은 고교학점제의 시행에 따라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근무 및 재학함으로써 발생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인사교류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는데, 유치원이나 사립대학의 교원은 여전히 파견근무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³⁾

□ 개정안은 파견근무의 대상에 최근 법 개정 시 제외되었던 유치원과 대학의 교원을 포함시키고, 이들을 포함한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이 가능한 업무와 기관을 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파견근무를 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을 심사할 때에는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에 대한 규정이 최근 개정(2025.3.18.)됨에 따라 제도가 도입되는 단계(2025.9.19. 시행)에 있으므로 제도의 시행경과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과 비록 입법취지는 다르지만, 파견근무를 규정한 현행법의 개정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치원 교원의 경우 제외된 사실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 교육부는 파견근무 제도를 통해 파견기관에서 유치원과 사립대학 교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해당 교원의 전문성도 신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3)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대학의 교원만 파견근무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의결(의안번호: 제2205130호, 조정훈의원 대표발의)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유치원 교원도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파견대상에서 제외됨.

□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4개)에서는 사립유치원은 공립 유치원과 인건비 운용 체계가 달라 파견에 따른 대체 인력 임용, 인건비 지급 등 기준 부재로 인한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입장임.

서울대학교는 파견기관인 ‘그 밖의 기관’은 정의가 모호하므로, ‘국내·외의 민간기관 및 단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8